

2006. 3. 17.(금)

제121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

심사보고서

-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자치행정위원회

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투자통상실장 유풍섭)

가. 제안사유
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소재지방이 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05. 6. 11 개정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50%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대상기업의 조건이 완화되어 시행되는바 국비보조의 확충을 통한 시의 건전한 재정확보와 우량기업유치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이 완화 고시됨(2005. 6. 11)
 《기존》 수도권소재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기업
 《변경》 수도권소재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기업
 - 기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대상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대상을 삽입함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후준)

- 본 조례는 우리지역에 투자하려는 국·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므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. 3. 7 제정되고 2003. 7월 일부를 개정하여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(주)유유에 국비 694백만원을 지원 받아 1,38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개업체에 3,143백만원(지방비 2,449백만원, 국비 694백만원)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
- 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전국이 개성있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(2004. 1. 10)을 제정 하였으며
- 동법 1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시군구 인구과밀 및 산업단지, 산업직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,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써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·도·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 하였으며
- 외국인투자기업, 타시도기업이 우리지역으로의 이전기업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형평에 맞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것이며
- 동법 관련 수도권 대학의 유치에 따른 지원대책과 혁신도시 관련 공공 기관 및 3개 연수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기업체, 연수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 하겠습니다.
- 문제점으로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하여 도비가 지원 되도록 되어

있으나, 지방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도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정식적인 예산 확보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충청북도 조례에도 도의 지방비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, 지원 받을 수 있는 동기유발 대책은? (김진학 위원)
- 제천에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 했으나 3개 연수원 유치노력에 안간힘을 쓴고 있는데 대한 연수기관에 대한 지원안을 본 조례에 삽입 할 수 없는가? (김진학 위원)
- 제24조는 중·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사항인데, 이 지원 기준액 보다 더 지원을 한다고 했을때 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? (유경상 의원)

나. 답변요지 (투자통상실장 윤종섭)

- 적절한 지적이라 봄.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혀 없고 단지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항만 나열되어 있어 작년 8월 우리가 지회보고형태의 건의를 한 적이 있지만, 앞으로 시차원에서 긴박하게 대책을 마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- 2005. 9월말 의원발의로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는데, 이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, 연수원 유치에도 소홀함없이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이와 관련한 지원안은 제24조 마지막항인 3항에 나오는데 최고 5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았음.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기업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대규모로 오는 것은 특별지원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알며,

지원해 주는 액수가 많을 수록 좋겠지만 시재정을 감안하여 일단 50억
으로 해서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은 별도 50%를 국비로 받아서 지원토록
마련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.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. 끝.